

# ① 彈劾審判委員會

○ 現行: §112 ① 2호  
 탄핵심판은  
 憲法委員會  
 에서 管掌

○ 民正黨: §110 ① 2호  
 탄핵심판은 憲法  
 裁判所에서 管掌

○ 民主黨: §67.

第 67 條 ① 彈劾事件을 審査하기  
 위하여 彈劾審判委員會를 둔  
 다.

② 彈劾審判委員會는 大法院長

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 
 4人과 國會議員 4人의 委  
 員으로 構成한다. 다만, 大統  
 領 大法院長을 審判할 境遇  
 에는 國會議長이 委員長이 된  
 다.

③ 彈劾決定은 構成員 6人以上  
 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.

④ 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  
 免함에 그친다. 그러나 이에  
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 
 責任이 免除되지 아니한다.

⑤ 彈劾審判에 관한 事項은 法  
 律로 정한다.

\* 民主黨은 違憲法例 審査權을  
 大法院에 주고 違憲政黨解  
 散權을 削除,  
 彈劾審判權만 남음으로  
 現行 憲法委員會를 削除  
 하시기 때문에 彈劾審判  
 은기하여 彈劾審判委員會  
 를 設置

\* 民正黨에서는 憲法裁判  
 所를 두면 彈劾審判委  
 員會 設置는 不要